
서정요양원 이용 안내서

2026년도



시설장 인사말

“서정요양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 소가족화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서정요양원에서는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라는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요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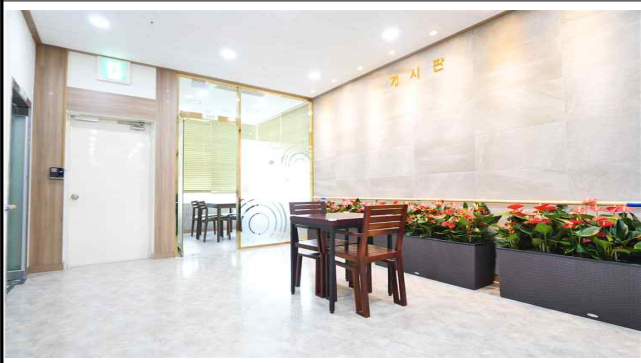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저희 서정요양원은 존엄케어를 실천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요양원 소개

기관명	서정요양원	설치일자	2019.08.07
급여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	80명
대표자	윤형원	협력의료	오산한국병원, 연세실버케어의원
홈페이지	www.sjsenior.co.kr	전화번호	031-666-7090
주 소	경기도 평택시 동구재길16 서정요양원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간식비포함)	11,500원 (1일)	
	상급침실 비용	1인실 15,000원 (1박 기준)	
시설규모	건물면적 451.54 m ² , 연면적 1,943.5 m ²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주방	화장실	목욕실	세탁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특별침실
개수	26	2	4	1	2	1	4	1	1	24	4	2	1	1	1

● 서정요양원의 특성

- ◇ 존엄케어
- ◇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 ◇ 쾌적하고 현대적인 시설
- ◇ 협력의료기관의 전문의료혜택
- ◇ 다양한 식단구성과 균형잡힌 식사 제공
- ◇ 산책 및 원예치료를 할 수 있는 옥상정원

● 서정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2023.11.01. 영상촬영시작

- ◇ **설치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 ◇ **설치장소** : ☒ 침실 ☒ 공동거실(복도포함) ☒ 현관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 엘리베이터 ☒ 주차장

● 서정요양원 선임 요양보호사 운영제도

- (수행기준) 선임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로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 근무시간 내 선임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
 - 또한, 선임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는 해당 업무에 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역할을 수행

○ (준수사항)

- 1) 상담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을 금지한다.
- 2) 동료 요양보호사 등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 3) 과도한 선임 요양보호사 역할 수행으로 담당 수급자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동료 직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
- 4) 선임 요양보호사 역할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동료들에게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5)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서정요양원의 우수사례

◇ 관계기관의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력추가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의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점검받고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함을 인정받음.

◇ 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정기평가B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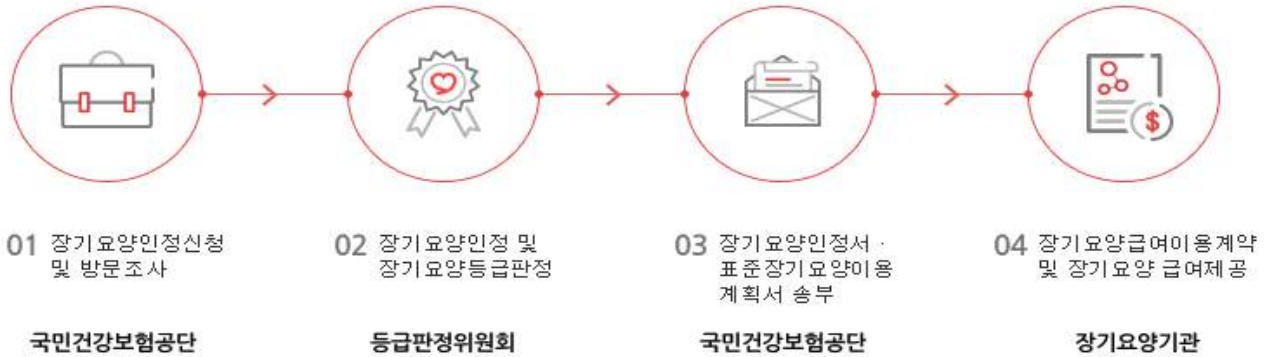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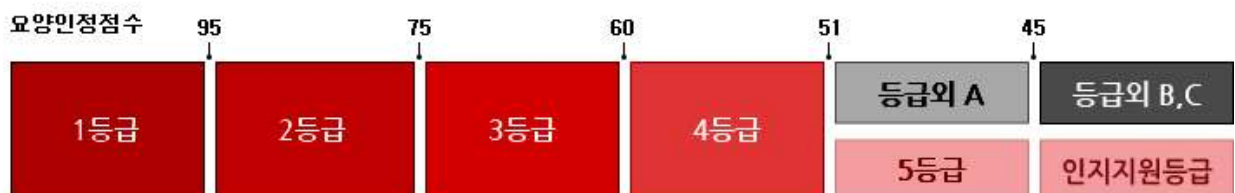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 급여서비스 안내

신체활동 지원	1. 세면도움	1) 세면도움
	2. 구강청결도움	1) 칫솔질 2) 의치손질 3) 구강청결(완전구강관리)
	3. 머리감기도움	1) 머리감기 2) 침상 머리감기
	4. 몸단장	1) 면도 2) 머리단장 3) 손, 발, 청결유지
	5. 옷갈아입기도움	1) 옷갈아입기
	6. 신체청결도움	1) 몸씻기 도움 2) 전신 및 부분 닦기
	7. 식사도움	1) 일반식사 2) 경관영양
	8. 체위변경	8. 체위변경
	9. 화장실 이용도움	1) 변기사용 2) 침상배변·배뇨 3) 기저귀 교환 4) 유치도뇨관 사용도움
	10. 이동도움	1) 침상내이동 2) 휠체어 이동 3) 보행 돕기
	11. 신체기능 유지증진	1) 관절구축(오그라듐) 예방 2) 일어나 앉기, 서기, 보행, 운동 도움 3) 보장구 이용도움 4) 경구약물 복용도움
	12. 산책(외출)동행	1) 산책(외출)동행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1. 인지관리지원	1. 인지관리지원
	2. 의사소통 도움	2. 의사소통 도움

기능회복훈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1. 신체 및 건강체조·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2. 신체기능훈련·기본 동작훈련·일상생활 동작훈련	2. 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 동작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5. 물리치료	1) 온냉열치료 2) 전기치료 3) 운동치료

1. 관찰 및 측정	1) 건강상태 확인	(1) 활력징후 측정 (2) 신장, 체중, 가슴둘레 측정 (3) 혈당 측정
2. 건강 관리	1) 기초건강 관리	(1)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2) 투약관리	(1) 약물 관리 (2) 투약이행관리 (3) 경구 투약 (4) 비위관·위관 투약 (5)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6) 인슐린 주사
	3) 감염간호	(1) 감염예방 (2) 손씻기 (3) 소독관리 (4) 감염성 폐기물 분류 및 수거
	4) 관절구축 예방	(1)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2)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5) 치매돌봄 정보제공	(1) 치매약물 관리
	6) 인지훈련	(1) 인지기능 평가 (2)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7) 의료기관 의뢰 등	(1) 촉탁의 진료지원 (2) 의료서비스 진료지원

3. 간호관리	1) 욕창관리	(1) 욕창예방 (2) 욕창간호
	2) 영양관리	(1) 영양상태확인 (2) 위루관(PEG-tube) 관리 (3) 비위관 관리 및 경관영양 식이제공
	3) 배설관리	(1) 배뇨훈련 (2) 유치도뇨관 관리 (3) 관장 (4) 장루관리 (5) 회음부 간호
	4) 통증관리	(1) 통증사정 (2) 온·냉요법 (3) 이완요법 (4) 약물요법
	5) 호흡기 간호	(1) 가습기 (2) 산소요법 (3) 흡인간호 (4) 기관절개관 관리
	6) 구강간호	(1) 구강간호
	7) 당뇨발 관리	(1) 당뇨발 관리 (2) 상처관리
	8) 투석관리	(1) 복막투석 관리 (2) 혈액투석 관리
4. 응급 서비스	1) 응급간호	(1) 질식사 응급대처 (2) 경련시 응급대처 (3) 화상시 응급대처 (4) 낙상시 응급대처 (5) 뇌졸중 전조증상시 응급대처 (6) 심장마비시 응급대처
5. 임종관리	1) 임종간호	(1) 임종간호

● 일일 생활시간표 및 프로그램 계획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5:00-06:00	기저귀케어. 도뇨관비우기. 이동변기비우기.소변통비우기						
06:00-07:00	기상 / 세안도움(얼굴로션도포) 및 아침식사 준비. (남자어르신매일면도실시)						
07:00-08:00	아침식사 및 약복용. 양치도움. 이동도움 정리정돈						
08:00-09:00	라운딩.인수인계						
09:00-10:00	기저귀케어(수시).도뇨관비우기. 이동변기비우기.소변통비우기(목욕진행)						
10:00-10:30	오전간식 제공			오전: 목욕 (월,화,수,목,금)-손발톱정리			
10:30-11:30	신체기능프로그램. 점심식사 준비. 이동도움						
12:00-13:00	점심식사. 약복용. 양치도움.이동도움						
13:00-14:00	선생님 점심시간 및 휴식, 방 환기						
14:00-14:30	기저귀케어(수시) 라운딩. 도뇨관비우기. 이동변기비우기,소변통비우기						
14:30-15:00	간식. 이동도움						
15:00-16:00	프로그램진행 (월,목,금-인지프로그램 3회), (화,수-여가프로그램 2회) (토-손,발 마사지)(일-산책)						
16:30-17:00	실내외 산책, 주변정리, 저녁식사 준비						
17:00-17:30	저녁식사 및 약복용,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인수인계						
17:30-18:00	양치도움, 이동도움, 라운딩						
18:00-19:00	저녁식사(N근무자), 쓰레기통비우기						
19:00-20:00	기저귀케어(수시). 도뇨관 비우기. 이동변기 비우기. 소변통비우기, 취침전약 복용						
20:00-21:00	라운딩. 바이탈체크, 취침도움						
21:00-22:00	기저귀케어(수시), 라운딩(수시)						
23:00-24:00	야간점검 및 기록지 작성,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일과표는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신체기능 프로그램 (A,B그룹)	신체기능 프로그램 (A,B그룹)	신체기능 프로그램 (A,B그룹)	신체기능 프로그램 (A,B그룹)	신체기능 프로그램 (A,B그룹)	.
기능회복훈련 산책 (전체)	인지 프로그램 (B그룹)	여가 프로그램 (A그룹)	여가 프로그램 (B그룹)	인지 프로그램 (A그룹)	인지 프로그램 (C그룹)	기능회복훈련 손발 마사지 (전체)
■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월(인지B), 화(여가A), 수(여가B), 목(인지A)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족지지(생신잔치)진행- (분기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역사회 행사참여 진행- (반기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어버이날 행사 및 송년행사 진행- (년1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6. 09월 기준 요양원 현황)

○ 종사자 근무체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관리원
1	1	2	4	1	38	1	1
주간근무 08:30 ~ 17:30				야간근무 17:30 ~ 익일 08:30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수가 (단위 : 원)

등급	수가	본인부담 (20%)
1	93,070	18,610
2	86,340	17,260
3,4,5	81,540	16,300

○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 100분에 60/40)	감경 8%, 12%

○ 계약의사

초진 (18,840원)	재진 (13,370원)
--------------	--------------

○ 배상책임보험 (한화손해보험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 내용	계약기간
대인- 1인당 최대1억원 1사고당 최대 5억원 대물- 1사고당 최대 5천만원	2026년 8월 12일부터 2027년 8월 12까지

○ 화재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보험 내용	계약기간
화재시 최대 3억원	2026년04월 03일부터 2027년 04월 03까지

○ 승강기 보험 (현대해상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 내용	계약기간
대인 - 1인당 최대 8천만원 대물 - 1사고당 최대 1천만원	2026년 9월 27일부터 2027년 9월 27까지

○ 자원봉사 안내 (신청은 기관전화 : 031-666-7090)



봉사분야	봉사내용
정서지원	말벗, 산책, 프로그램 진행
의료봉사	한방진료, 수지침
이미용봉사	목욕, 마사지, 머리카트, 손발톱 정리
프로그램	행사지원, 노래, 레크레이션

2026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 본인 부담(일반,감경,의료,기초) + 비급여 (식사,간식,약제비) = 이용자 부담금
- 상급침실료 1인실 (월 45만원)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수가 (보건복지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2.1명이상)

1일/원

구분	등급	1등급	2등급	3~5등급	비고
급여비용	수가	93,070	86,340	81,540	1일
비급여비용	식사	10,500원			1일/3회
	간식비	1,000원			1일/2회

- 본인부담금 계산(일비용 *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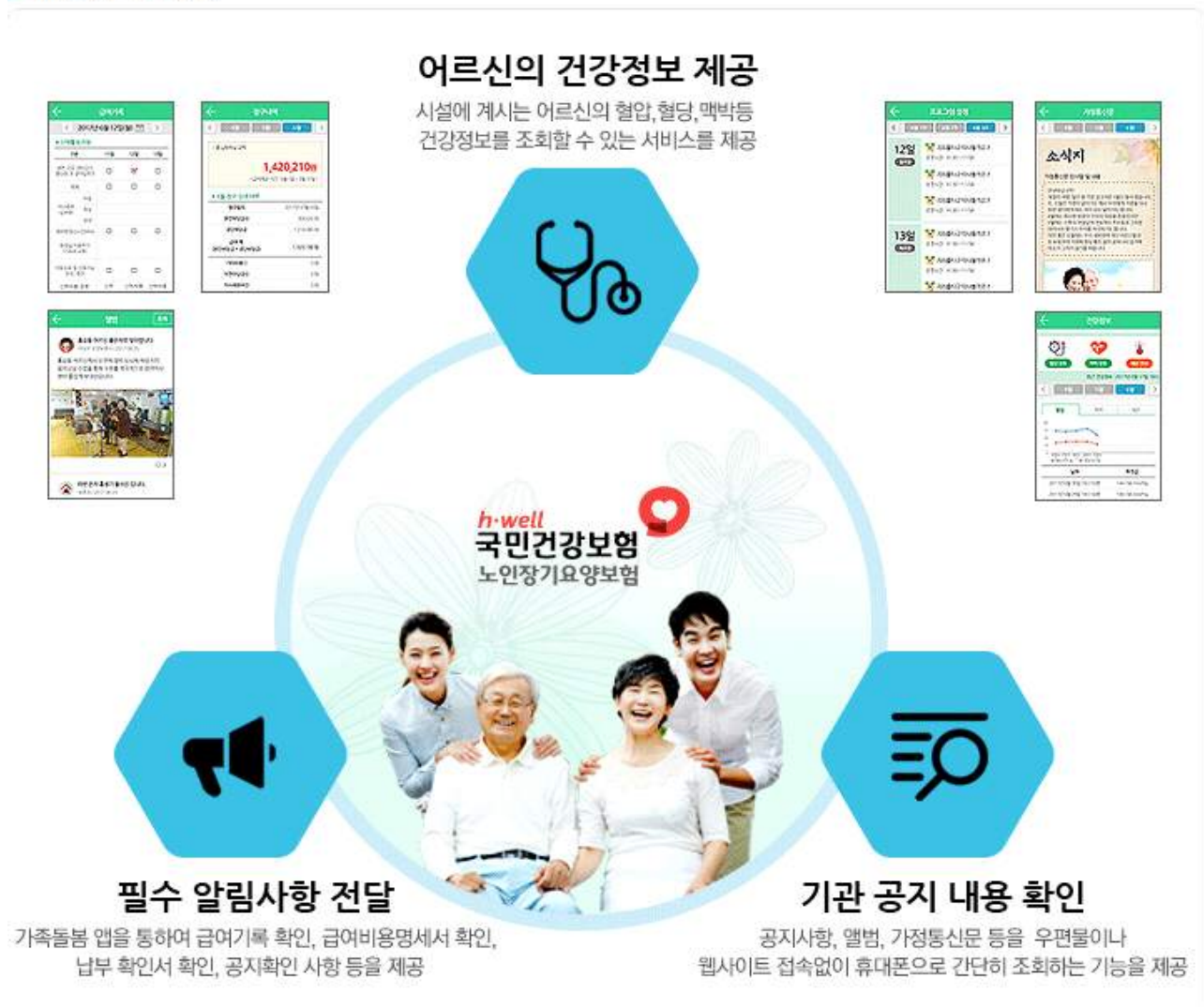
30일/원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비고
일반 (20%)	급여 (본인부담금)	558,420	518,040	489,240	
	비급여 (식사/간식)	345,000			
	총 부담금	903,420	863,040	834,240	
감경, 의료 (12%)	급여 (본인부담금)	335,050	310,820	293,540	
	비급여 (식사/간식)	345,000			
	총 부담금	680,050	655,820	638,540	
감경 (8%)	급여 (본인부담금)	223,360	207,210	195,690	
	비급여 (식사/간식)	345,000			
	총 부담금	568,360	552,210	540,690	

● ICT 기술서비스 (보호자 앱)

-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호자 앱을 통하여 부모님의 건강상태 및 앨범사진을 제공 합니다.
-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앱을 통해 어디서든지 소통이 가능 합니다.

가족돌봄앱 주요장점



▶ 이용신청은 기관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대응 현황

구분 \ 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상 황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생활시설 면회		비접촉 면회 실시				면회 금지
이용자·자원 봉사자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비상 체계	감염관리 책임자	코로나 비상체계 연락망에 의해 감염 관리 철저				
	감염예방 활동	1) 시설 외부인(보호자 면회객포함) 출입금지 시행 2) 종사자 출근시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후 서비스 제공 3) 간호사에 의한 감염예방교육 및 자체 소독 매일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의전화

1577-1000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절차

대한민국 아들·딸의 이름으로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돌보겠습니다.

01 신청

클릭

02 인정조사

클릭

03 등급판정

클릭

04 이용계획서

클릭

05 결과통지

클릭

06 서비스이용

클릭

●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10**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름,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 폭력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업무 실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은?

-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전문상담서비스, 일시보호, 의료지원, 법률지원, 서비스 연계 등
-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 노인학대예방 교육, 노인인권 교육 등
- 노인인권보호사업 : 노인인식개선 사업, 효행교육 등
- 협력체계 구축사업 : 자문위원회,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등
-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 : 언론 홍보, 학술행사, 캠페인, 사진전 등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를 하게되면?



알기 쉬운 노인학대 사례

신체적 학대



저소득의 장남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할아버지는 장남내외가 일을 나가는 낮에는 주로 실직한 손자와 함께 있었다. 알코올 중독인 손자는 수시로 할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할아버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정서적 학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큰아들 부부와 함께 생활하였다. 며느리는 할머니 면전에서 "노인네, 돈은 안 벌면서 밥은 얼마나 먹는지", "병원비며 약값이며 감당이 안된다"며 수시로 눈치를 주었다.

성적 학대



요양보호사 A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요양시설의 거실에서 할아버지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할아버지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경제적 학대



노부부는 "이파트 구입자금을 보태주면 평생 모시고 살겠다"는 아들의 약속을 믿고 거주하던 집과 재산을 처분하였다. 그러나 함께 산 지 얼마되지 않아 아들은 태도를 바꿔 "단간방을 구해 줄테니 따로 나가서 살라"고 강요하였다.

방임



사업 실패 후 남편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생활고와 부양부담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모에게 식사도 제대로 행여주지 않았다. 또한 방도 청소해주지 않아 음식물이 몇 달째 썩고 있는 등 비위생적인 거주 환경을 방치하였다.

유기



장남과 차남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모 부양을 서로 미루며 서로의 집 앞에 모셔다 놓는 상황을 반복하였다. 추운 겨울날 집 밖에서 떨고 있는 노모를 이웃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노인학대 행위는 이렇게 처벌 받습니다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1.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3.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
4.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5.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1389로 신고합니다.
6.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7.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노인학대.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지침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직원, 장애인관련 모든직원, 사회복지 상담원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학대 - 물리적인 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경제적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성폭력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
-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있는지 살핍니다.
-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1389로 신고합니다.
-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 상담전화



1577-1389